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9년 10월 22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장 진 영

●대통령령 제30130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특별수사제1부, 특별수사제2부, 특별수사제3부, 특별수사제4부”를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반부패수사제3부, 반부패수사제4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수사제1부, 특별수사제2부, 특별수사제3부, 특별수사제4부”를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반부패수사제3부, 반부패수사제4부”로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특별수사제1부장, 특별수사제2부장, 특별수사제3부장, 특별수사제4부장”을 “반부패수사제1부장, 반부패수사제2부장, 반부패수사제3부장, 반부패수사제4부장”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수사제1부장 · 특별수사제2부장 · 특별수사제3부장 및 특별수사제4부장”을 “반부패수사제1부장 · 반부패수사제2부장 · 반부패수사제3부장 및 반부패수사제4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나. 중요 기업범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제14조제3항 중 “공공수사부, 특별수사부”를 “형사제4부, 공공수사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특별수사부”를 “형사제4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부장”을 “각 부장(제13조제4항의 경우에는 형사제4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을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4항 · 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수사부장”을 “반부패수사부장”으로 한다.

제16조의3제3항 중 “공공수사부 · 특별수사부”를 “형사제6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 형사제7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 공공수사부”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중 “형사제6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공수사부·특별수사부”를 “형사제6부·형사제7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공수사부”로, “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공수사부·특별수사부·산업기술범죄수사부”를 “형사제6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공수사부·산업기술범죄수사부”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 중 “각 부장”을 “각 부장(제13조제4항의 경우 인천지방검찰청은 형사제7부장을 포함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은 형사제6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을 “형사제6부장(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및 형사제7부장(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4항·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의7제1항 중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수사부장”을 “반부패수사부장”으로 한다.

제16조의8제1항 중 “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공수사부·특별수사부”를 “형사제3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공수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과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2항·제4항·제7항·제8항 및 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을 “형사제1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7항제1호 중 “특별수사사건”을 “부패 범죄사건”으로 한다.

별표 4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란, 인천지방검찰청란, 수원지방검찰청란, 대전지방검찰청란, 대구지방검찰청란, 부산지방검찰청란 및 광주지방검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 공 수 사 제 1 부 반 부 패 수 사 제 1 부 반 부 패 수 사 제 2 부 반 부 패 수 사 제 3 부 조 사 제 1 부 강 력 부 공 판 제 1 부 사 무 국	공공수사지원과 수사제1과·수사정보과 수사제2과 수사지원과 조사과 조직범죄수사과·마약수사과 공판과 총무과·사건과·집행제1과·집행제2과·기록관리과·형사증거과·피해자지원과
-----------	--	---

인천지방검찰청	형 사 제 1 부 형 사 제 7 부 강 력 부 공 판 송 무 부 사 무 국	조사과 수사과 마약수사과 공판송무과 총무과·사건과·집행과
수원지방검찰청	형 사 제 1 부 형 사 제 6 부 공 판 부 사 무 국	조사과 수사과 공판과 총무과·사건과·집행과

대전지방검찰청	형 사 제 1 부 형 사 제 3 부 사 무 국	조사과 수사과 총무과 · 사건과 · 집행과
---------	---------------------------------	-------------------------------

대구지방검찰청	형 사 제 1 부 반 부 패 수 사 부 공 판 부 사 무 국	조사과 수사과 공판과 총무과 · 사건과 · 집행과
부산지방검찰청	형 사 제 1 부 형 사 제 4 부 강 력 부 공 판 부 사 무 국	조사과 수사과 조직범죄수사과 · 마약수사과 공판과 총무과 · 사건과 · 집행과

광주지방검찰청	형 사 제 1 부 반 부 패 수 사 부 공 판 부 사 무 국	조사과 수사과 공판과 총무과 · 사건과 · 집행과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3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두는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하고, 반부패수사부장의 분장 사무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또는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0월 22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교육부장관

유 은 혜

●대통령령 제30131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